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October 21, 2021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거래 소식지 (2021년 9월 3~5주차, 10월 1주차)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u>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u> 9. 14	• (이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0. 25.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u>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u> 9. 14.	• (이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0. 5.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u>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u> 9. 15.	• (이슈)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 (주요내용) 동반성장위원회는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평가결과를 발표함
<u>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u> 9. 15.	• (이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

이슈	주요 내용
<u>약관심사지침 폐지제정</u> 9. 16.	• (이슈) 「약관심사지침」 폐지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약관심사지침」에 설정된 3년 유효기간의 만료(2021. 9. 21.)를 앞두고 기존 지침을 폐지하여 새롭게 제정
<u>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u> 9. 16.	• (이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9. 17.부터 2021. 10. 7.까지 행정예고하였음
<u>태국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u> 9. 17.	• (이슈) 태국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해외진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i) 인도네시아 및 태국 경쟁법의 주요 내용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실시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ii) 태국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
<u>2021년 대리점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계획 발표</u> 9. 27.	• (이슈) 대리점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계획 발표 •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임을 발표
<u>공정위, 제8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u> 9. 28.	• (이슈) 소비자정책포럼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제8회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을 개최
<u>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학술행사 개최</u> 9. 28.	• (이슈) 온라인 플랫폼 학술행사 개최 •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및 고려대학교 ICR 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
<u>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u> 9. 30.	• (이슈) 행정규칙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4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0. 1. 부터 2021. 10. 21. 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힘

이슈	주요 내용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위 주요 업무현황 보고 10. 5.	• (이슈) 주요 업무현황 보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지난 10. 5.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추진 중인 6대 핵심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10. 7.	• (이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신설 및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 위축 등을 우려한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하여 해명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신임 상임위원 임명 10. 8.	• (이슈) 인사이동 • (주요내용) 공정위는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을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10. 8.	• (이슈) 가맹사업거래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II. 주요 소식	
강민국 의원,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현황 지적 9. 13	• (이슈)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현황 지적 • (주요내용) 강민국 의원은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공정위가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용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 시행 9. 14.	• (이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 (주요내용)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14일 시행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발표 예정 9. 16.	• (이슈)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1년 10월 중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판단 시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 보유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발표할 예정
공정위, 최근 5년간 과징금 수납 현황자료 제출 9. 17	• (이슈) 과징금 수납 현황 • (주요내용) 공정위의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의 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이고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 6,600만원임. 또한, 2020년 기준 과징금 수납액은 2,632억원이고 수납율은 45.6%임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사건처리 1건당 497일 9. 20.	• (이슈) 사건처리 기간 • (주요내용)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매년 길어져 1건당 평균 2017년 322일에서 지난해 497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짐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표준계약서 관련 내용 9. 21.	• (이슈) 온라인 플랫폼 표준계약서 • (주요내용)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플랫폼 검색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클릭수와 판매실적, 구매평 등 구체적인 항목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표준계약서 필수기재항목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공정위,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에 과징금 1,429억 원 부과 9. 22.	• (이슈) 10대 대기업 과징금 현황 • (주요내용) 2018~2020년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29억 2,000만원이며 대기업 집단이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총 22건인 것으로 집계됨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기업 기업결합 심사기준 관련 연구 용역 발주 예정 9. 22.	• (이슈) 기업결합 심사기준 관련 연구 용역 • (주요내용)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힘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 수정안 마련 9. 23.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i) C2C 거래 분쟁 발생시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제공의무 범위와 제공 대상을 수정하고, (ii)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완화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공정위, 조달청 고발 요청 5건 중 1건 시효 만료 관련 9. 26.	• (이슈) 공정위 조달청 고발 요청 • (주요내용) 공정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으로 보낸 입찰 담합사건 132건 중 27건(전체 사건의 20.5%)이 공소시효 만료로 의무고발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나타남
‘기술유용’ 공정위 신고 5년간 2건에 그쳐 9. 26.	• (이슈) 기술유용 공정위 신고 • (주요내용)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가 적발된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중 신고 사건은 2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짐

이슈	주요 내용
온라인플랫폼법 적용 예상 기업 24곳의 최근 2년 영업 손실 현황 9. 28.	• (이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적용대상 • (주요내용)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적용이 예상되는 24개 국내 기업 중 2019년에는 11개 기업이, 2020년에는 10개 기업이 영업손실 발생
공정위, 사건수 감소하였으나 사건당 조사 기간 증가 10. 4.	• (이슈) 공정위 사건수 및 조사기간 • (주요내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수는 2016년 472건에서 2020년 293건으로 매년 감소하였으나 사건당 평균 조사 기간은 2016년 164일에서 2020년 315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짐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10개 중 4개 이상 재선정 10. 4.	• (이슈)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 (주요내용) 공정위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한 업체는 총 44개로,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재선정률은 40.9%에 달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짐
기업결합심사 직원 1인당 평균 처리건수 124건 10. 5.	• (이슈) 기업결합심사 처리 현황 • (주요내용)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심사 실무 인력은 동일하여, 1인당 평균 처리건수가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위 개입 처리율이 0.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짐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 분 쟁조정 중 관련 법령 부존재 로 종결되는 사건 67% 10. 5.	• (이슈)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 분쟁조정 현황 • (주요내용) 최근 4년간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의 분쟁조정 중 관련 법령이 없어 종결처리되는 사건의 금액 비중이 전체 금액의 67%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 신청 건수 10. 5.	• (이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 신청 건수 • (주요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인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CP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지난해 7개이고, CP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누적 704개이나 최근 5년 간 평가를 신청한 기업수는 총 34개에 불과하여 참여유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짐
공정위, 동의를결 제도 활성 화 방안 검토 10. 5.	• (이슈) 동의를결 제도 • (주요내용) 동의를결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인용된 동의를결은 모두 대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동의를결 제도가 중소기업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짐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동의의결에 서면심의 방식 도입 검토 10. 7.	• (이슈) 동의의결 제도 • (주요내용)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연내 개정하여 동의의결 진행 여부 결정에 서면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III. 국회 발의법안	
<u>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추경호 의원안) 국회제출</u> 9. 13.	• (이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운영위 추경호 의원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임오경 의원안) 국회제출</u> 9. 14	• (이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운영위 임오경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강은미 의원안) 국회제출</u> 9. 15.	• (이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환노위 강은미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u> 9. 23.	• (이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송재호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유의동 의원안) 국회 제출</u> 10. 8.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유의동 의원은 '통신판매업자' 용어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수정하고, 적법한 사업 허가 등록 여부를 표시할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며 연대책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공정거래 소식지 (2021년 9월 3~5주차, 10월 1주차)

I. 보도자료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 14.)

- 공정위는 (i) 보존 서류 대상 확대, (ii)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0. 25. 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보존 서류 대상 확대 (안 제6조 제1항 제5의4호 및 제8호 신설)

- (개정 배경) 개정 하도급법(2022. 2. 18. 시행 예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제12조의3 제3항)
- (개정 내용)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함. 또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여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7조의4 신설)

- (개정 배경) 개정 하도급법(2022. 2. 18. 시행 예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체결해야 하는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제12조의3 제3항)
- (개정 내용) 시행령은 이 외에도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을 비밀유지계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함

2.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 14.)

- 공정위는 (i) 여행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ii)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iii) 가입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iv)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0. 5. 까지 행정예고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여행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안 제3조)

- **(개정 배경)**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 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안 제2조의2),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있음
- **(개정 내용)** 동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

•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신설)

- **(개정 배경)** 현행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정 내용)**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

• 가입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신설)

- **(개정 배경)**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개정 내용)**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재검토기한 재설정 (안 제6조)

- **(개정 배경)**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고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내용)** 동 해약환급금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3.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9. 15.)

-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 9. 15.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
- 평가 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210개 기업 중 “최우수” 36개사, “우수” 63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19개사 및 “미흡” 10개사로 나타났으며(공표유예 12개사 제외**), 특히, 과거 제조업, 건설, 식품, 정보·통신 업종에 집중되어 있던 “최우수” 기업이 가맹업과 광고업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됨

*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코로나 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하여 미거래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노력 등을 반영

** 공정위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 중인 10개사와,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기업 2개사의 경우 등급 공표를 유예함

4.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9. 15.)

-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
- 그간 선정지침상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기준에 있는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온 바, (i)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하고, (ii)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하여 실적기준을 완화할 예정임(2022년 시행)

* 입찰방법 중 하나로, 사업실적·기술능력·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자만 입찰 참가 가능

** 낙찰방법 중 하나로, 업무수행능력(업무실적 등), 기업신뢰도, 사업제안내용, 입찰가격 등을 평가하여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5. 약관심사지침 폐지제정 (9. 16.)

- 공정위는 「약관심사지침」에 설정된 3년 유효기간의 만료(2021. 9. 21.)를 앞두고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약관 심사의 청구 요건 등 체계화

- 기존 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 약관심사의 대상사업자에 관한 자격 및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을 추가
- 아울러 기존 지침에 있던 약관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약관 심사 요건 중 심사대상에 관한 부분으로 이동

• 재검토기한 설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 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본 지침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령되는 예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

6.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 16.)

-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9. 17.부터 2021. 10. 7.까지 행정예고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 **(개정 배경)**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음
*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 17개 업종)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 **(개정 내용)**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 **(개정 배경)**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 시 준수 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
- **(개정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
*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 주행(범칙금 3만원)

7. 태국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9. 17.)

- 공정위는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해 (i) 기업결합·사건처리절차 등 인도네시아 및 태국* 경쟁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ii) 태국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함**
*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우리 기업들이 연간 각 9억 달러 및 1억 달러 이상을 투자(2019년 기준)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진출한 국가로서, 현지 경쟁법에 대한 설명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의 경우 2020년 12월에 발간한 바 있음

8. 2021년 대리점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계획 발표 (9. 27.)

-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임을 발표

9. 공정위, 제8회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개최 (9. 28.)

- 공정위는 제8회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을 개최하여 12개 소비자 정책당국* 및 2개 국제기구**와 함께 각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i)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ii) 온라인상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 (iii)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해결 협력 방안 등 비대면 디지털 시대의 시의성 있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일본, 호주, 대만, 미국, 한국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유럽소비자센터(ECC)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학술행사 개최 (9. 28.)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및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
 - 최난설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경쟁법의 역할 및 개입에 관한 국내 외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플랫폼 시장에 대한 최근 경쟁법의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
 - 박준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에서 발의된 5개 플랫폼 패키지 법안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플랫폼 규제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플랫폼 패키지 법안 발의에 따른 경쟁법 확대 움직임을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 조직법적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

11.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9. 30.)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021. 12. 30. 시행)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0. 1. 부터 2021. 10. 21. 까지 행정예고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보호대상 기술 범위 확대

- 보호대상 기술을 확대해 영세기업의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고 관련 법령들과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최저가격유지 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

-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해, 최저 또는 최고 가격유지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위법성 판단기준, 법위반 예시 등’을 통합해 규정

* (현행 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최고가격유지 행위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
→ (개정안) 최저 또는 최고 가격유지행위 구분을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을 삭제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신고포상금 결정통보 및 수령의사 확인절차 전자화 등**

- 공문·서식의 배포·취합이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이뤄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통보 및 수령의사 확인시 이를 이메일,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포상금 지급 예산 부족시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수직통합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관련 규정 명확화**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상 차별행위는 자사 대비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 대비 차별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 수직통합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하여 새롭게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추가

12.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위 주요 업무현황 보고 (10. 5.)

-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추진중인 핵심과제로서 (i)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ii)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iii)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iv)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v)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vi)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13.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10. 7.)

- 2021. 12. 30.자로 시행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신설 및 개정 조항이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비판적 보도에 대하여,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해명함:
 - **(사익편취규제 관련)** 개정안의 사익편취 허용 기준 미충족시 관련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한 특수관계인 지분 대량 매각과 지배권 약화가 우려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공정위는 (i) 개정안은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ii) 거래 및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 적용과 부당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
 -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 관련)**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와 관련하여 외국 법령과 충돌하여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해외계열사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해명
 - **(자료제출명령제 관련)**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의무로 인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공정위는 자료제출의무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밀유지명령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명
 - **(정보교환 담합 관련)**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통상적 대화도 담합에 해당되어 제재받을 수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교환만 금지되며 통상적 정보 교환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

14.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신임 상임위원 임명 (10. 8.)

-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됨

[김성삼 신임 상임위원 약력]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학사) (1989)
- 듀크대 (석사 수료) (2001)
- 한양대 경제법(박사) (2021)

(주요경력)

-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1991)
- 시장구조개선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2009~2016)
- 기획조정관 (2016~2018)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2018~2019)
- 기업집단국장 (2019~2020)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2020)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2021 현재)

15.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0. 8.)

-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작성 방법 및 예시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0. 8.부터 2021. 10. 28.까지 행정예고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지서식 IX. 신설)

- **(개정 배경)** 그간 사업방식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실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 **(개정 내용)** 가맹본부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함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별지서식 V. 5. 신설)**

- **(개정 배경)**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 **(개정 내용)** 가맹본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함

-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실 (별지서식 III. 1. 개정)**

- **(개정 배경)** 현행 시행령 상 공정위 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의 등록취소 처분 사실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공정위 뿐 아니라 시·도지사의 등록취소 처분 사실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 **(개정 내용)**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

II. 주요 소식

1. 강민국 의원,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현황 지적 (9. 13.)

-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전심사청구* 건수는 총 38건으로 연평균 3.8건으로 집계됨. 강민국 의원은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적은 것은 공정위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법률에 미숙한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용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 사업자가 특정 행위를 시작하기 전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저촉 여부를 공정위에 확인하는 제도
-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의원실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짐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9. 14.)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법률 제18451호)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9월 14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 한편 방통위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i)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위임사항 관련 시행령과 금지행위 위반 심사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며, (ii) 신설된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점검대상 확대 및 점검내용을 구체화하고, (iii)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정비에 반영할 것이며, (iv)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로부터 구체적 개선 방안과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3.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발표 예정 (9. 16.)

- 공정위는 다음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판단에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 보유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파편적으로 이뤄졌던 제재를 플랫폼업체의 특성에 맞게 마련한 것으로, 업체 입장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4. 공정위, 최근 5년간 과징금 수납 현황자료 제출 (9. 17.)

-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윤관석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이고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 6,600만원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
**소멸 시효가 도래해 받지 못한 과징금 액수
- 윤관석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체납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과징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기업은 경영이 악화돼 도산 위기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체납 우려가 있는 기업에겐 징수유예·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

5. 공정위, 사건처리 1건당 497일 (9. 20.)

-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2017년 1건당 평균 322일에서 지난해 497일로 매년 길어진 것으로 알려짐
-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사받는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이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워 처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지연된 것이라 설명

6.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표준계약서 마련 예정 (9. 21.)

-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플랫폼 검색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클릭수와 판매실적, 구매평 등 구체적인 항목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항목을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공정위는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상품 노출순서 결정기준은 국내 플랫폼 상위 기업이 이미 공개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설명

7. 공정위,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에 과징금 1,429억원 부과 (9. 22.)

-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윤관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29억 2,000만원이며 대기업 집단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총 22건인 것으로 집계됨

8.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기업 기업결합 심사기준 관련 연구 용역 발주 예정 (9. 22.)

-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배력 평가 요소, 시장 확정 방식,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힘

9.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마련 (9. 23.)

-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정위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근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 수정안에서는 (i)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수정권고가 있었던 C2C 거래 분쟁 발생시의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확인의무(안 제29조 제1항)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하는 판매자 정보를 성명, 전화번호, 주소에서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한정하고 제공 대상도 피해자가 아닌 분쟁조정기구와 법원 등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ii)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연대책임(안 제25조)과 관련하여서는 면책 요건을 확대하고,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단독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짐

10. 공정위, 조달청 고발 요청 5건 중 1건 공소시효 만료 (9. 26.)

-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으로 보낸 입찰 담합사건 132건 중 27건(전체 사건의 20.5%)이 공소시효 만료로 의무고발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나타남
- 민형배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요식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고발 공소시효를 늘리는 등의 관련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의무고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

11. ‘기술유용’ 공정위 신고 5년간 2건에 그쳐 (9. 26.)

- 국회 정무위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6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신고 사건은 2건으로 나타남. 또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윤관석 의원은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 실효를 높이고,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당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12. 온라인플랫폼법 적용 예상 기업 24곳의 최근 2년 영업손실 현황 (9. 28.)

-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에게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4개 국내기업 중 2019년 11개 기업, 2020년 10개 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짐

13. 공정위, 사건수 감소하였으나 사건당 조사 기간 증가 (10. 4.)

-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수는 2016년 472건에서 2020년 293건으로 매년 감소하였으나 사건당 평균 조사 기간은 2016년 164일에서 2020년 315일로 매년 증가함(특히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기간은 전체 기업 평균치보다 약 2배 더 길었음)
- 민형배 의원은 “공정위가 명시된 처리기간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면서 “법률상 처리기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시스템 개선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신고인, 피심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14.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10개 중 4개 이상 재선정 (10. 4.)

-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한 업체는 총 44개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면, 명단이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감점됨에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재선정률이 40.9%에 달하고 있음
- 강민국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현행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를 강화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15. 기업결합심사 직원 1인당 평균 처리건수 124건 (10. 5.)

-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건수는 2016년 646건에서 2020년 8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심사 실무 인력은 매년 7명으로 동일하여, 1인당 평균 처리건수가 2016년 92.3건에서 2020년 123.6건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 3647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17건을 조건부 승인하고 1건을 불허하여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위 개입 처리율은 0.5%에 불과
- 민형배 의원은 “기업결합 심사 담당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부실심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력 확충과 심사 시스템 개선으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

16.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 분쟁조정 중 관련 법령 부존재로 종결되는 사건 67%(10. 5.)

- 국회 정무위 이정문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와 금액은 149건, 75억 1,800억 원임. 유형별로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이 가장 많았고, 분쟁조정 사유는 대금정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 분쟁조정 중 관련 법령이 없어 종결처리되는 사건의 금액이 50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7%를 차지
- 이정문 의원은 “공정거래 분쟁조정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최근 주로 발생하는 플랫폼을 통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할 근거가 없는 만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

17.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 신청 건수 (10. 5.)

-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인 CP(Compliance Program)*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CP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지난해 7개로, CP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누적 704개이나 최근 5년 간 평가를 신청한 기업 수는 불과 34개인 것으로 나타남
*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 CP등급평가제도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임. 평가에서 A등급 이상 취득한 기업의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면제되고, 공표명령이 감경되거나 면제됨
- 김병욱 의원은 내실있는 CP운동을 위해 경쟁당국이 기업의 시각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령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평가에 소요되는 기업 부담을 낮추고 참여 유인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

18. 공정위,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 (10. 5.)

-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동의의결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19건 중 9건이 인용되었으며 모두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김병욱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 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
-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10. 5.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중소기업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19. 공정위, 동의의결에 서면심의 방식 도입 검토 (10. 7.)

-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연내 개정하여 동의의결 진행 여부 결정에 서면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그간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해 온 구술심의는 동의의결 개시를 전원회의 개별 안건으로 하고, 조사 대상 피심인 측이 참석해 대면심의를 받아야 하여 일정 조율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 이에 반해 서면심의를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원회의 관련 일정 조율없이 타 안건이 상정된 회의를 마친 이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처리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적거나, 기업의 피해구제 방안이 명확해 동의의결 신청에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적용될 것으로 보임

III. 국회 발의법안

1.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추경호 의원안) 국회제출 (9. 13.)

- 국회 운영위 소속 추경호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안 제20조)

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임오경 의원안) 국회제출 (9. 14.)

- 국회 운영위 소속 임오경 의원은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안 제5조 제1항)

3. 하도급법 일부개정안(강은미 의원안) 국회제출 (9. 15.)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은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를 위하여 (i)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ii)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iii)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규정(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4.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 (9. 23.)

-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은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선금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안 제6조, 제24조, 제24조의3 및 제24조의5)

5.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유의동 의원안) 국회 제출 (10. 8.)

-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은 (i) 현행법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용어를 현재 거래현실에 맞게 ‘온라인 판매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수정하고(안 제2조 등), (ii) 재화 등의 판매를 위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경우 판매자로 하여금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안 제13조 제1항 제4호), (iii)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안 제20조의2 제3항)을 신설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